

 국토교통부		보도 설명자료		
		배포일시	2021. 1. 8.(금) / 총 8매(본문5, 붙임3)	
담당 부서	코로나19 생활물류긴급대응반 상황총괄대응과	담 당 자	• 과장 이창훈, 서기관 이병민 • ☎ (044) 201-4156	
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 국회 통과」

-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스마트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 기틀 마련 -

-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 제정안이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 최근 전자 상거래 활성화 추세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면서,
 - 택배산업 규모*는 연평균 8.8% 성장('09~'19)하였고, 택배 물동량은 작년 한 해에만 전년 대비 18% 성장하여 약 33억개에 달하였다. 이를 환산하면,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약 63회 택배를 이용한 셈이다.
- * 택배산업 매출액 : 2.7조원('09) → 6.3조원('19)
- 소화물배송(음식배달)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이 지난해 3/4분기 거래액이 4.7조원(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에 달할 정도로 소화물배송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 ☐ 그럼에도, 택배산업과 관련한 제도적 기반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간략한 근거만 있고, 소화물배송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는 등 법·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 이번 생활물류법 제정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고, 종사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생활물류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제도화】

- (택배업 등록제) 그간 국토부 고시에 근거하던 택배사업자 인정제를 생활물류법에 따른 택배사업자 등록제도로 전환하여 택배서비스업의 법적 지위를 고시에서 법령으로 격상한다.
- (소화물배송업 인증제) 배달대행, 퀵서비스 등 소화물배송업은 현재처럼 자유업 기반을 유지하되,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요건을 심사하여 우수사업자로 인증하는 '소화물배송사업자 인증제'가 도입된다.

【종사자 보호】

- (표준계약서) 분류업무 명확화, 심야배송 제한 등 종사자의 적정 작업조건을 보장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작성·사용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 국토교통부는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표준계약서 사용을 '택배사업자 등록 요건'으로 반영함으로써 택배업 전반에 표준계약서를 확산할 계획이다.
- (계약갱신청구권) 택배 종사자의 안정적 계약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6년 간의 운송 위탁계약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

-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택배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영업점이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관리하도록 하는 안전관리 의무가 택배사업자에게 부여된다.
 - 이를 통해,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 체결한 종사자에 대해서도 택배사업자가 영업점과 협력하여 종사자 안전을 관리하게 된다.
- **(소화물배송 공제조합)** 배달대행·퀵서비스 등 소화물배송 종사자의 유상운송 보험료 부담 저감을 위한 “소화물배송 공제조합” 설립근거가 마련되었다.
- **(휴식공간)** 생활물류 종사자를 위한 쉼터 조성 근거가 마련되는 한편, 사업자에게 종사자 휴게시설 확보 의무가 부여되었다.

【산업 육성 · 관리】

- **(생활물류 인프라)**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택배 물류센터 등 생활물류 인프라의 원활한 확충을 위하여 생활물류시설 건설·보수·개량비를 재정으로 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 도심 배송거점 등에 생활물류시설 용지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장에게 생활물류시설 확충 계획을 도시계획 및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가 부여되었다.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기본계획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분야별 육성정책, 연구·개발, 시설·장비 확충 등이 포함된다.

- **(창업 지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해외진출 등에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소비자 권익 증진】

- **(손해배상 연대책임)** 영업점, 종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택배를 분실·훼손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자도 영업점, 종사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연대책임이 부여되었다.
- **(서비스약관)** 생활물류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국토부장관은 표준약관의 사용을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고, 사업자는 서비스약관을 정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 **(서비스평가)** 국토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 품질 증진 및 종사자·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소비자 만족도, 서비스 안전성, 종사자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장질서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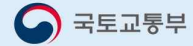
- **(택배전용화물차 관리)** 화물운수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택배차량 수요에 따라 현재 증차가 허용되어 있는 택배전용화물차의 허가 목적(택배 집화·배송) 외 유상운송 행위를 금지하였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조항(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마련되었다.
- **(부당한 이익 수취 금지)**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자, 영업점, 종사자가 아닌 자가 부당하게 택배비, 배송비의 일부를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하였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5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 **(개선명령)** 국토부장관은 서비스의 품질, 종사자 안전 확보, 소비자 편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 생활물류법은 최근 택배 종사자 과로사 등 시급성에 따라, 당초 발의안('20.10.8)보다 시행시기를 앞 당겨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당초 발의안은 공포 후 1년)될 예정으로,
 -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생활물류법이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표준계약서 마련, 택배사업자 등록기준 정비 등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생활물류법 제정으로 그간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의 근거법이 마련됨으로써 택배, 소화물배송 산업을 포스트 코로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종사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밝히며,
 - 특히, 택배 종사자의 과로사 문제와 관련하여, “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 표준계약서에 적정 작업조건을 규정하는 한편, 종사자 보호 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생활물류법에 따른 개선명령 발동, 서비스 평가 반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행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아울러,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생활물류법이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소화물배송업은 인증을 신청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우수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로, 소화물배송 인증 없이도 도보·자전거 등을 이용한 배송은 현재처럼 자유업으로 사업 활동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드론 등 새로운 운송수단을 활용한 배송업은 기술개발, 안전성 등 실용화 여건을 고려하여 추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스마트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을 만들어 갑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을 제도화 합니다.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도입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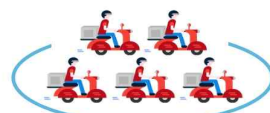
종사자를 보호합니다.



택배기사
계약갱신청구권 **6년** 보장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



배달 라이더 등을 위한
공제조합 신설



사업자에 대한
영업점 안전관리 의무 부여



휴식·복지공간 등
생활물류 쉼터 조성



산업을 지원합니다.



생활물류 **인프라** 확충



물류센터 **첨단화** 지원



창업지원 및 **전문인력** 육성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조세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



택배거래구조 개선
(백마진 금지)

소비자 권리를 보호합니다.



사업자, 영업점, 종사자
손해보상 **연대책임** 부여



약관 제정 및 신고 의무,
표준약관 권고



만족도·안전성 등
서비스 평가

참고 2

한 눈으로 보는 생활물류법

구분	주요내용	조문
총칙	목적	제1조(입법목적 : 생활물류 발전 기반 조성, 종사자·소비자 권익 증진 ⇒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국민경제 발전)
	정의	제2조(택배업 : 집화·분류·배송을 거쳐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배송 소화물배송업 : 이륜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 또는 중개)
	국가·지자체 등 책무	제3조(생활물류업 발전 정책수립, 종사자 권익증진 등 책무 부여)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화물운수사업에 관하여는 화물차법 따름)
제도화	택배업 등록제	제5조(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제6조(등록의 결격사유) 제7조(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13조(등록의 지위승계), 제14조(휴업 및 폐업신고) 등
	택배업 위탁관계 제도화	제8조(택배사업자-영업점-종사자 업무위탁 근거 마련)
	소화물배송업 인증제	제17조(소화물배송사업자 인증제 도입) 제18조(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운영), 제19조(인증의 취소)
종사자 권익 증진	계약갱신청구권	제10조(택배기사에게 계약갱신청구권 6년 부여) 제11조(위탁계약 해지 시 서면 2회 통지 의무 부여)
	표준계약서	제32조(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 작성·사용 권장)
	협회·공제조합	제40조(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생활물류 관련 협회 설립 가능) * 부칙 제5조(기존 협회는 생활물류법에 따른 협회로 인정) 제41조(종사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
	정책협의회	제21조(종사자 보호, 산업 상생 등 협의를 위한 정책협의회 운영)
	영업점 관리	제9조(사업자에게도 영업점의 안전·보건조치 사항 관리의무 부여)
	생활물류 쉼터	제37조(종사자 휴식·복지공간 제공 등을 위해 쉼터 설치·운영)
	인프라 설치 지원	제29조(생활물류시설 건설·보수·개량 비용 보조) 제31조(생활물류시설의 도시계획 반영 의무화 등 용지확보 지원)
산업 지원	계획 수립	제20조(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재정·행정 지원 등	제23조(시설·장비·연구개발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조세 특례	제24조(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등 감면근거 마련)
	산업 생태계 조성	제25조(창업지원), 제26조(전문인력 육성·관리) 제27조(포장·보관·수송·시스템 표준화 추진), 제28조(시범사업)
	인프라 설치 지원	제29조(생활물류시설 건설·보수·개량 비용 보조) 제31조(생활물류시설의 도시계획 반영 의무화 등 용지확보 지원)
소비자 권익 증진	서비스 평가	제35조(서비스 만족도·안정성 등 평가, 우수사업자 우선지원)
	서비스 약관	제33조(사업자 약관 제정 및 신고 의무화, 표준약관 권장)
	연대책임 부여	제8조(소비자 손해시 사업자, 영업점, 종사자 연대책임)
시장 질서 관리	부정한 이익 수취 금지	제34조(사업자·영업점·종사자 아닌 자의 운송비용 수취행위 제한)
	택배용 화물차 이용제한	제16조(택배전용화물차의 택배 외 물품운송 제한)
	개선명령·권고	제39조(국토부장관은 사업자에게 안전배송 조치 등 개선명령)
	벌칙·과태료	제49조(벌칙), 제50조(양벌규정), 제51조(과태료)

- ☐ '19.8.2 : 제20대 국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발의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21836호)
- ☐ '19.12.6 : 제20대 국회 제정안 공청회 개최
- ☐ '20.6.18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재발의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0685호)
- ☐ '20.6.18~ : 이해관계자 릴레이 간담회 약 35차례 개최
- ☐ '20.10.8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주요 이해관계자 합의안
발의(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4473호) 및 상생협약 체결
- ☐ '20.11.18 : 화물연대 조건부 입법취지 공감의견 공문 제출
- ☐ '20.11.19 : 국토교통위, 생활물류법 제정안 공청회 개최
- ☐ '20.11.30 : 화물업계(일반·개별·용달) 조건부 법안 동의 공문 제출
- ☐ '20. 12. 9 : 4개 화물업계 단체(일반·개별·용달·주선)-국회-정부 간
화물운수사업 상생발전 협약식 체결
- ☐ '20. 12.24 : 교통법안 소위 및 국토교통위 통과
- ☐ '21. 1. 7 : 법사위 통과
- ☐ '21. 1. 8 : 본회의 통과